

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. 7. 21 선고 2023가단1096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주식회사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윤영

변 론 종 결 2023. 6. 23.

판 결 선 고 2023. 7. 21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43,9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22. 12. 16.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보이스피싱범에게 원고의 신분증,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, 보이스피싱범이 보낸 프로그램을 원고의 휴대전화에 설치하였다.

나. 보이스피싱범은 원고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고의 국민은행계좌에서 2022. 12. 16.경 피고 명의의 가상계좌(기업은행 (계좌번호 1 생략), 이하 ‘이 사건 가상계좌’라 한다)로 9,900,000원 및 34,000,000원 합계 43,900,000원을 이체하였다. 이 사건 가상계좌에 입금된 43,900,000원은 이 사건 가상계좌의 모계좌(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(계좌번호 2 생략) 계좌, 이하 ‘이 사건 모계좌’라 한다)로 송금되었다. 다. 원고는 2022. 12. 19.경 이 사건 모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신청을 하였고, 기업은행은 이 사건 모계좌를 지급정지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3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이 사건 가상계좌로 43,900,000원을 이체하였으므로,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위 43,900,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을 제1, 2호증의 각 기재, 주식회사 C(이하 ‘C’이라 한다)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, ① 피고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로, C와 결제대행 계약(이하 ‘이 사건 결제대행 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 C에게 ‘결제기관 내에 피고의 대표 모계좌를 두고 가상의 자계좌를 C의 고객에게 부여하여 C의 대금수납 및 결제업무 등 금융서비스를 C을 대신하여 처리해주는 서비스 및 이에 부수하는 환불을 처리해주는 서비스, C의 요청에 따라 C에 입점 또는 등록한 제품 또는 용역 제공사 등에 대하여 대금의 정산 또는 결제 등을 처리하는 서비스’를 제공하기로 한 사실, ② 피고는 이 사건 결제대행 계약에 따라 C의 가맹점이 배달료 지급에 사용되는

포인트를 결제(충전)하기 위한 입금계좌로 가상계좌를 제공하여 온 사실, ③ 원고의 돈이 이체된 이 사건 가상계좌도 C의 포인트 결제를 위한 가상계좌로, 성명불상자가 C 포인트 구매대금으로 원고 계좌에서 이 사건 가상계좌로 43,900,000원을 이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피고가 43,900,000원을 송금 받은 것은 C과의 이 사건 결제대행 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고, 나아가 위 돈은 향후 C에 정산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.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.

3.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의 지급정지신청에 따라 기업은행이 이 사건 모계좌를 지급정지하였는데, 피고가 위 지급정지에 이의를 제기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였으므로, 피고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.

나. 판단
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제2호는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명의인의 채권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, 피고는 앞서 본 바와 C과의 이 사건 결제대행 계약에 따라 포인트 대금을 송금 받았다는 사유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정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고, 달리 피고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기 위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. 원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도 이유 없다.

4. 결 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.

판사 유재영